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9. 3.(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8. 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8. 8

라. 상정일자 : 2014. 9. 3(제218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장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보조금 용어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 (안 제2조제1호)
-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 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이 예산에 의한 보조사업과는 달리 통일된 집행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보조금 관리조례의 ‘용어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서식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현행법령 부패영향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집행 및 관리되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4명 (차준택, 유일용, 허 준, 이영훈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4명 : 찬성 4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에 의하여” 를 “제29조에 따라” 로, “관리에 관하여” 를 “관리에”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군·구에 대한 시책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하나”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의한” 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을 “제1항의” 로,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에 의한” 을 “제9조에 따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한다” 를 “한정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
라”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규정에 의한 지시” 를 “지시” 로,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년도” 를 “회계연도”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당해” 를 “해
당”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29조에 따라 ----- ----- 관리에 -----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조금”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군·구에 대한 시책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p> <p>②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③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조금” 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군·구에 대한 시책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p> <p>2. “보조사업” 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3. “보조사업자” 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4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p>	<p>제4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 ① -----</p>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계상 신청의 예외)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조(차등보조) ① 제6조제2항에 의한 군·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군·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가 산정·공표하는 당해 회계연도 전전년도에의 재정력 지표값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5조(예산계상 신청의 예외) -----

----- 각 호의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차등보조)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

-----.

② 제1항의 ----- 안전행정부-----
----- 해당 -----
-----.

제9조(보조금 교부신청)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제9

9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자금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11조(교부조건) ① (생략)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5. (생략)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 ① ~ ④ (생략)

⑤ 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조에 따른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제12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시-----

----- 제12조제2항에 따라-

-----.

제14조(보조사업 실적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있어서 당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동종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할 보조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이의 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반환 지시,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사업 실적 제출) ① -----

----- 회계연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의 신청 등) ① -----

-----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

-----.